제291회 시의회 임시회
기 획 경 제 위 원 회

I·SEOUL·U
너와 나의 서울

서울산업진흥원

정 관 변 경 보 고

2020. 2. 20.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산업진흥원 정관변경 보고

□ 개 요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55조의3

제55조의3(조례상보고 등) 시장 및 교육감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의회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 보고의 건으로 보고시기와 가장 가까운 회기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고시기가 폐회 중일 때는 의장과 상임위원장에게 우선 보고한 후 다음 회기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보고한다.

□ 서울산업진흥원 정관변경 보고

○ 변경 사유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 개정에 따른 상임이사 관련 사항 반영
- 국민권익위원회의 「성범죄 경력자의 공공기관 채용근무제한 강화」 권고를 반영한 임원 결격사유 정비
- 서울시 '기본재산 목록 정관기재 시정요구'에 따른 기본재산 목록 정비

○ 변경 내용

① 상임이사제 도입을 위한 임원 관련 규정 정비

- 조례 개정에 따라 대표이사 부재 시에도 진흥원 내부임원이 직무대행토록 하여 경영과 사업의 일관되고 효율적인 추진이 가능하도록 상임이사 관련 사항 반영

현 행	개 정 (안)
제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재단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2. 생략 3. 〈신 설〉 4. 이사 15명 이내(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다) 5. 감사 2명 6. 이사장은 대표이사가 겸직할 수 있다.	**제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재단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2. 현행과 동일 3. 상임이사 2명 이내 4. 이사 15명 이내(이사장 및 대표이사, 상임이사를 포함한다) 5. 감사 2명 6. 이사장은 대표이사가 겸직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제9조(임원의 임면) ①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②이사는 선임직이사와 당연직이사로 구분하며, 선임직이사에는 노동자이사를 포함하고 당연직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서울특별시 경제일자리기획관 2. 서울특별시 재정기획관 3.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③~⑨ 생략	**제9조(임원의 임면)** ①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②이사는 선임직이사와 당연직이사로 구분하며, 선임직이사에는 상임이사 및 노동자이사를 포함하고 당연직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서울특별시 경제일자리기획관 2. 서울특별시 재정기획관 3.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③~⑨ 현행과 동일
제13조(임원의 직무) ① 생략 ②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대표이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제9조의 당연직이사 기재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신 설〉 ④이사는 이사회에 부의한 의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참여한다. ⑤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⑥삭제	**제13조(임원의 직무)** ① 현행과 동일 ②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대표이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상임이사까지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제9조의 당연직이사 기재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상임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직제 및 정원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분장한다. ④이사는 이사회에 부의한 의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참여한다. ⑤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⑥삭제

관련 근거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개정(제287회 정례회, 2019.7.18.)	
	기 존	**개 정**
	제7조(임원)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7조(임원) ② 대표이사, 이사장을 포함한 선임직 이사 및 감사는 시장이 임명한다. 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 중 상근임원은 2명 이내로 둘 수 있고 그 외에는 비상근으로 한다.

② 임원 결격사유에 성범죄 경력자 관련 규정 신설

- 현행 법률상 성범죄 경력자는 '공무원'과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나,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임직원' 채용과 근무에 관한 제한사항은 누락되어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정비 시행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8. 생략 9. 〈신 설〉 ②~③ 생략	**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8. 현행과 동일 9.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③ 현행과 동일

관련 근거

○ **성범죄 경력자의 공공기관 채용근무제한 강화 반영(국민권익위원회 의결 내용 중 발췌)**

1 공공기관 임원 결격사유에 성범죄사항 추가

○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현행법상 '임원'의 성범죄에 관한 결격사유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추가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공기업법」에는 '임원'의 성범죄 사항이 결격사유에 기 규정

2 공공기관 직원의 성범죄 관련 근무·채용 제한규정 마련

○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에 반영

▪ (예시) '직원 결격사유'의 하나로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

③ 설립 이후 기본재산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현행화

현 행	개 정 (안)
제31조(재산) ① 생략 ②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별표1〉 2.~3. 생략 ③ 생략	**제31조(재산)** ① 현행과 동일 ②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별표1〉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3. 현행과 동일 ③ 현행과 동일

현 행	개 정 (안)
〈별표1. 설립당시 기본재산〉	〈별표1. 기본재산 목록〉

현 행

〈별표1. 설립당시 기본재산〉

연번	구분	내역	금액
1	기본재산	서울특별시 출연금(예금)	40억 원

개 정 (안)

〈별표1. 기본재산 목록〉

(단위 : 천원)

구분	내역	금액
부동산	서울특별시 출연금	15,000,000
	우리은행 출연금	500,000
	중소기업중앙회 출연금	100,000
	이익잉여금 등	37,835,823
서울산업진흥기금	이익잉여금 등	67,793,203
계		121,229,026

관련 근거	○ 기본재산 목록 정관기재 시정요구 (공기업담당관-12997, 2019.11.6.)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 정관에는 자본금 또는 출연금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출자·출연기관 정관에 기본자산 목록을 기재하여야 하나, 일부 기관에서 정관에 기본재산 목록을 기재하지 않고 있어 시정을 요구

□ 향후 추진계획

○ 이사회 의결 : ‘20.3월

○ 서울시장 승인 : ‘20.4월

○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허가 : ‘20.4월

서울산업진흥원 정관변경(안)

서울산업진흥원 정관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 2 장 임원 및 직원

제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재단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및 대표이사 1명
2. 삭제
3. 상임이사 2명 이내
4. 이사 15명 이내(이사장 및 대표이사, 상임이사를 포함한다)
5. 감사 2명
6. 이사장은 대표이사가 겸직할 수 있다.

제9조(임원의 임면) ①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②이사는 선임직이사와 당연직이사로 구분하며, 선임직이사에는 상임이사 및 노동자이사를 포함하고 당연직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서울특별시 경제일자리기획관
2. 서울특별시 재정기획관
3.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③감사 2명중 1명은 서울특별시 경제정책과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④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되, 대표이사、선임직감사、선임직이사는 시장이 임명한다. 단, 조례 또는 정관으로 당연히 임명되는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의 공모 및 추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⑤대표이사가 임명된 경우, 시장은 대표이사와 대표이사의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목표와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에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인 경영목표에 관하여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⑥삭제
⑦삭제
⑧시장은 대표이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 중 해임할 수 있다.
⑨선임직임원이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3조(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대표이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상임이사까지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제9조의 당연직이사 기재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상임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직제 및 정원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분장한다.
④이사는 이사회에 부의한 의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참여한다.
⑤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⑥삭제

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삭제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6. 재단과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
7.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9.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재단의 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당시 그에 행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 6 장 재산 및 회계

제31조(재산) ①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별표1〉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설립 후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 및 개인의 출연금 또는 토지·건물 등의 부동산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결산상 잉여금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도록 의결한 재산

③재단의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시의 출연금, 기금운용과 관련한 이자수익금, 위탁사업수입금, 법인사업수입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저촉되지 아니한 금융기관 및 기업 등 민간의 출연금 및 기부금, 기타수입금 등으로 구성하며, 재단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보통재산에서 충당한다.

〈별표1. 기본재산 목록〉

(단위 : 천원)

구분	내역	금액
부동산	서울특별시 출연금	15,000,000
	우리은행 출연금	500,000
	중소기업중앙회 출연금	100,000
	이익잉여금 등	37,835,823
서울산업진흥기금	이익잉여금 등	67,793,203
계		121,229,026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재단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2. 생략 3. 〈신 설〉 4. 이사 15명 이내(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다) 5. 감사 2명 6. 이사장은 대표이사가 겸직할 수 있다.	**제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재단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2. 현행과 동일 3. 상임이사 2명 이내 4. 이사 15명 이내(이사장 및 대표이사, 상임이사를 포함한다) 5. 감사 2명 6. 이사장은 대표이사가 겸직할 수 있다.
제9조(임원의 임면) ①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②이사는 선임직이사와 당연직이사로 구분하며, 선임직이사에는 노동자이사를 포함하고 당연직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서울특별시 경제일자리기획관 2. 서울특별시 재정기획관 3.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③～⑨ 생략	**제9조(임원의 임면)** ①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②이사는 선임직이사와 당연직이사로 구분하며, 선임직이사에는 상임이사 및 노동자이사를 포함하고 당연직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서울특별시 경제일자리기획관 2. 서울특별시 재정기획관 3.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③～⑨ 현행과 동일
제13조(임원의 직무) ① 생략 ②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대표이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제9조의 당연직이사 기재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신 설〉 ④이사는 이사회에 부의한 의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참여한다. ⑤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⑥삭제	**제13조(임원의 직무)** ① 현행과 동일 ②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대표이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상임이사까지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제9조의 당연직이사 기재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상임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직제 및 정원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분장한다. ④이사는 이사회에 부의한 의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참여한다. ⑤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⑥삭제

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8. 생략

9.〈신 설〉

②～③ 생략

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8. 현행과 동일

9.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③ 현행과 동일

제31조(재산) ① 생략

②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별표1〉

2.～3. 생략

③ 생략

제31조(재산) ① 현행과 동일

②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별표1〉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3. 현행과 동일

③ 현행과 동일

〈별표1. 설립당시 기본재산〉

연번	구분	내역	금액
1	기본재산	서울특별시 출연금(예금)	40억 원

〈별표1. 기본재산 목록〉

(단위 : 천원)

구분	내역	금액
부동산	서울특별시 출연금	15,000,000
	우리은행 출연금	500,000
	중소기업중앙회 출연금	100,000
	이익잉여금 등	37,835,823
서울산업진흥기금	이익잉여금 등	67,793,203
계		121,229,026